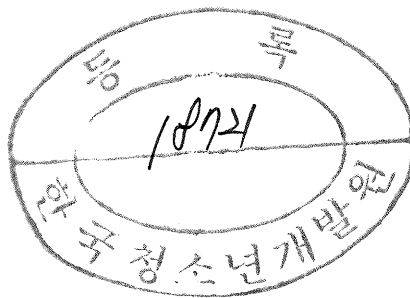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을 중심으로 -

김 문 섭 / 철학 박사
(대구한의대학교 교수)





- 「ISSUE PAPER」는 국내외 청소년 관련 이슈를 다루는 전문 연구서로서 한국청소년개발원 내외 전문가들의 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본 서에 게재된 내용은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서 내용의 무단전제를 금하며, 인용 시에는 출처 및 저자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에 대한 문의 및 건의 사항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정보학술센터
Tel (02)2188-8844, www.youthnet.re.kr

목 차

I.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근로보호	1
1. 청소년과 근로문제	1
2. 청소년정책과 관련법률	2
3.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근로보호	7
II.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 내용 분석	10
1.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	10
2. 청소년근로보호의 역사적 발달	14
3. 현행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주요내용	25
4. 아동근로보호규정	35
5. 독일의 직업교육과 직업학교	37
III.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40
1. 가칭 ‘청소년근로보호법’ 제정	40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항의 보완	40
3. 가칭 ‘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 설치	41

I. 한국의 청소년정책과 근로보호

1. 청소년과 근로문제

근로는 우리 삶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의 하나이다. 근로는 작게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적 존재감을 형성시키며, 크게는 사회가 유지 발전되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본주의적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개인이 갖는 근로의 의미는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우리 헌법에도 근로는 “모든 국민의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임”을 명시함으로써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최초로 나타난 인간다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의 권리는 오늘날에는 경제적 민주주의 사회실현을 위한 기본적 사상이 되고 있다.

근로의 의미는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인 청소년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수용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들의 근로에 대한 의욕과 욕구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이나 시간제 근무, 이른바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충족되고 있다. 18세 미만의 청소년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현실이기에 종일 근무제인 완전 취업보다는 파트타임 형식의 아르바이트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떤 형태나에 상관없이 청소년의 근로는 법에 의해 보장되고 또 청소년기 특성을 고려한 근로조건과 대우 등이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 근로의 실재를 들여다보면 사용자에 의한 위법, 불법, 탈법 등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청소년의 근로 의욕을 상실시키고 왜곡된 근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고 있다.

실제, 노동부가 올해 초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 474개소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65%의 업체가 여러 종류의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발생될 때마다 관련기관이나 감독관청은 청소년의 근로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런 유사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재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또한 사실이다.

청소년의 근로에 대한 법적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일부에 나타나 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제70조까지 보면 청소년의 근로 최저연령과 사용금지, 근로계약, 임금청구, 근로시간, 시간외 근로 그리고 갱내근로의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자적인 청소년 근로관련법이 아니기에 청소년 근로의 다양한 형태와 조건 등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 예로, 현행 근로기준법상 15세 미만인 자의 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인허증이 있으면 15세 미만도 근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절대적 노동금지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고 동시에 연령을 고려한 노동시간 등의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또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등의 내용이 없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일을 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부담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을 둘러싼 근로문제는 소위 근로청소년과 아르바이트청소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2. 청소년정책과 관련법률

우리나라의 청소년정책은 육성정책으로 표현된다. 이 정책을 제도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며 하위 법으로 청소년활동지원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등이 마련되어 있다. 각각의 법률은 그 제정 취지에 맞게 효력을 발생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제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정책이 수립되고 실현된다. 그러나 청소년근로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청소년 근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은 근로기준법이다.

1) 청소년기본법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제1조).

1991년 청소년육성법을 대체하여 제정된 이 법은 9세 이상 24세 이하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 받고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장기적·종합적 육성정책을 추진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청소년 육성정책은 청소년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총괄·조정한다. 국가는 범정부적차원에서 청소년 육성정책 과제를 설정·추진·점검하기 위해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해야 한다. 또 5년마다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 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하고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 등으로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가출 및 비행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해야 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거나 고용되지 않도록 하며, 폭력·학대·성매매 등 유해한 행위로부터 구제해야 한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가 설립되어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청소년보호에 관한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등 청소년육성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제31조). 또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설립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형성과 조화로운 성장을 위한 상담관련 정책을 연구 개발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제42조).

2)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기본법 37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제1조).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이다(청소년기본법 제3조 3호).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한다.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는 청소년활동지원본부를(제6조),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는 지방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제7조). 국가는 2개 이상의 시·도나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활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11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해야 한다.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또 종사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가는 수련활동의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수련활동인증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청소년활동지원본부에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의 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제61조). 또 전통문화가 청소년의 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과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제62조, 제63조).

이밖에 수련시설의 종류와 시설·안전·운영 등에 관한 기준, 운영자의 보험가입 의무, 한국청소년수련원설립, 수련지구의 지정과 조성계획,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 등의 지원, 청소년동아리 활동과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 관련기구에 대한 조세감면,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청소년은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인종·종교·성·학력·신체조건 등의 조건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관련정책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 대표를 참

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제4조). 청소년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과 궁·능·박물관·공원·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줄 수 있다(제6조).

시장·군수·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다(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체력검사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제8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청소년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 결과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제11조).

조화로운 성장과 정상적인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미비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선정하고, 기초적인 생활·학업·의료·직업훈련·청소년활동 등을 지원한다(제12조). 가출 청소년의 일시적인 생활지원과 선도,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4조).

4)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을 규제하고,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이 법에서 ‘청소년’이라함은 연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청소년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자, 사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청소년유해약물 등 및 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학대 등에 접촉이나 출입을 못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과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고 있거나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제지하여야 한다(제3,4,5,조). 청소년유해약물이라함은 술, 담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대마,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중독성·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일컫는다(제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을 비롯해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을 가리키며,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할 수 없다(제7조-제23조).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 되며,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제24조).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제25조).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및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19세 미만 남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행위 등의 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을 보호하며 이의 근절을 위하여, 조사·연구·교육·제도 기타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제4조).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청소년의 성에 대한 알선 영업행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 행위, 청소년 매매행위,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은 처벌된다(제5조-제10조).

대상이 된 청소년의 선도보호를 위하여 여러 수단이 강구된다. 대상청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며, 소년부 판사는 필요할 때에는 청소년 보호 센터 및 청소년 재활 센터에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탁하는 처분

을 할 수 있다. 윤락행위 방지 시설, 여성 복지 상담소, 모자 복지 상담소, 성폭력 피해 상담소,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은 대상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다(제13조-제17조).

대상이 된 청소년에 대한 비밀 누설은 엄격하게 금지되며, 수사기관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 및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제18조).

청소년위원회는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활동을 하며, 계도문에는 형이 확정된 후에 죄를 범한 자의 성명·연령·직업 등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제20조).

3. 근로기준법과 청소년 근로보호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독자적인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 다만 청소년근로와 보호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이 법은 근로조건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하면서도(제3조), 실질적 종속관계의 배제를 위하여 근로조건을 적정화를 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강제노동(제6조), 장기간 근로계약체결(제23조), 중간착취(제8조)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이를 위한 조항들이다. 그리고 이는 선원·공무원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류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규제 내용은 개별적 노동관계의 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근로기준에 관한 법은 임금법·휴가법·근로시간법·연소자근로보호법·부녀자근로보호법·해고보호법 등 단행특별법으로 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법률(근로기준법) 속에 근로기준에 관한 모든 것은 통일적으로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은 통일성과 보편성을 갖는다(<http://enc.daum.net/dic100>).

근로기준법 제5장(제62조부터 제74조)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여자와 연소자에 관한 취업 제한과 취업시기의 근로조건, 생리·산후 휴가 및 교육시

설 설치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5세 미만인 자(「초·중고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2조).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 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31조).

노동부장관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동법 시행령 제33조).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제63조). 18세 미만 청소년의 근로금지직종은 대통령령에 따라 다음과 같다(동법 시행령 제37조 관련).

-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압 작업 및 잠수작업
- 유류(주유업무 제외), 양조의 업무
-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
- 건설기계 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 업무
-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제64조: 연소자증명서). 근로계약은 청소년 본인이 사용자와 하게 되어 있으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제65조: 근로계약서). 다만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미성년자는 자신이 행한 근로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66조: 임금청구).

본 법은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규정함으로써 과도한 근로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였다(제67조: 근로시간).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시행령 제38조: 근로시간의 계산).

본 법 제68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야간작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다만 18세 미만자라도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후 야간,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이 경우라도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18세 미만인 청소년의 갠근로는 금지된다(제70조: 갠근로 금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갠근로가 허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39조(갠근로 허용업무)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갠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 관리·감독 업무
- 1호 내지 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II.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 내용 분석

1. 독일의 청소년보호 관련 법규

독일의 기본법(Grundgesetz)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제2항).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위한 환경조정에 관한 법 규제가 정당화된다. 이와 같은 헌법 규정에 바탕을 두고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몇 가지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

1)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 Gesetz)

1991년 독일은 이전까지의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을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Kinder-und Jugendhilfe Gesetz=KJHG)으로 개편하였다. 이 법에서는 이전의 청소년복지법과는 달리 국가의 통제와 간섭은 적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서비스와 지원제공을 확대시키는 특징을 담고 있다.

특히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책임과 모든 청소년이 책임감 있고 사회적 능력을 갖는 성인으로 발전해 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사회적 지원에 대한 요구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 복지에 대한 법적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각 지자체의 청소년청(Jugendamt)이 역할을 하도록 되어있다.

KJHG, 즉 아동청소년지원법에 나타난 주요 과제 및 서비스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청소년 사업, 청소년 사회사업, 교육적 아동과 청소년 보호
- 가족 지원
- 아동 보육
- 교육 지원
- 정신 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인 지원
- 보호 후견(Inobhutnahme)
- 미성년 후견(Vormundschaft)

-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정, 광역 청소년 청, 지역 청소년청의 조직, 정보보호, 청소년 지원의 질적 향상
- 기타 사회복지법률 등에서 정하는 서비스 등

다른 많은 연방 법률과 마찬가지로 본 법은 거시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주별 시행령을 통하여 정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 지원에 대한 각 주별 세부 내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서비스적 실천의 과제는 지방자치단체(Laender und Kommunen)에 있다.

2)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은 공공장소로부터 미성년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 주변의 풍속영업 등 삶의 환경을 조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법은 담배, 술, 필름, 컴퓨터 게임 등의 청소년에게 판매나 제공 그리고 청소년의 디스코텍이나 술, 음식점 등의 출입, 체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컴퓨터 게임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사용한 게임물 등은 영화나 비디오 필름 등에서 나이제한 등급을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용가능 연령 표시를 해야 한다. 이런 게임물은 나이제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만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제공될 수 있다.
- (2) 청소년에게 심히 해를 끼칠 수 있는 매체, 특히 폭력물 등의 금지는 더욱 강화되어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관한 연방심의위원회(Die Bundesprüfstelle Traeger Medien)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전쟁을 미화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청소년에게 자연스럽지 못한 그리고 성적 묘사가 강한 장면을 담고 있는 책, 비디오, CD, CD-ROM, DVD 등의 제공, 판매, 광고 등은 강력하게 금지되고 있다.
- (3) 청소년 유해매체물 연방심의위원회는 지금까지의 매체물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겨나는 모든 매체물의 성격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기관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포할 수 있다.

- (4) 16세 이하 청소년에게 영업적 목적으로 담배의 종류를 판매하는 것은 금지된다. 담배자판기는 2007년 1월 1일까지 16세 이하 청소년이 담배를 살 수 없도록 기술적으로 변환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더불어 극장 내에서는 18시 전 담배, 술의 광고가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할 시는 50,000Euro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각 주의 해당관청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내의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3) 청소년 성 보호 : 형법(Strafgesetzbuch)

독일에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독립된 법률(예; 우리나라의 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은 아직 없으며 형법에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련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 후반 북부유럽에서부터 ‘성 자유화’ 물결이 밀려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된 형법(1973년 11월, 제4차 개정)은 형법 제174조부터 194조까지 ‘성적 자기결정에 관련한 죄’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엄격한 성도덕에 기초한 몇몇 규정이 폐지되고, 기본적으로 성은 개인의 문제이므로 국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적으로 미숙한 청소년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나 표현으로부터 청소년은 보호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청소년이 성인들의 성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예를 들면 보호권자의 미성년자(18세 미만자) 성적 학대 금지(174조), 아동(14세 미만자)에 대한 성적 학대 금지(176조), 16세 미만 소녀와의 성행위 금지(182조), 미성년자에게 포르노 문서, 도화를 제공하거나 보고 듣게 하는 행위 금지(184조 1항), 아동의 성적 학대 등을 내용으로 한 포르노 문서, 도화를 배포하는 행위의 금지(184조 3항)등과 같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유해도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184조 1항은 포르노 문서, 도화를 18세

미만 자에게 제공, 인도하거나 듣고 보게 하는 것(1호), 18세 미만자가 출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 진열, 게시, 관람하게 하거나 듣고 보게 하는 것(2호), 18세 미만자가 출입하거나 관람할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제공, 광고, 추천한 자(5호)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 단, 1호에서 미성년자에게 포르노물을 관람시킨 자가 보호권자일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184조 4항). 이는 부모의 교육권(기본법 제6조 2항)을 배려한 것이다. 또한 잔학하고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한 인간에 대한 폭력행위를 기술하고 이러한 폭력행위를 찬미 혹은 그것을 경미한 것으로 표현하거나, 인종간의 증오심을 유발하는 문서나 도화를 18세 미만자에게 제공 또는 인도하거나 듣고 보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하지만(131조 1항 3호), 여기에서도 보호권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동조 4항).

4)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독일은 청소년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독자적인 청소년근로보호법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18세 미만의 청소년 근로와 관련하여 효력을 가지며 직업교육과정의 청소년, 취업청소년 또는 자영업 청소년, 취업이나 자영업과 근로상황이 유사한 기타 근로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 그리고 직업교육과 유사한 교육내용을 갖는 교육과정에 있는 청소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한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은 주 5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15세 미만 근로가 금지되어 있으며 농업이나 신문배달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6시부터 20시 사이로 제한되어 있으며 제빵점, 음식점, 문화공연 등과 관련해서는 예외가 인정된다.

청소년 근로보호법은 최저 연휴가와 직업학교(Berufsschule)에 다니는 것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조항을 벗어난 어떤 근로계약도 금지되어 있다. 청소년 근로보호법의 위반은 불법적 행위가 된다. 또한 14살의 청소년은 법적으로 하루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가 허락되며, 이것 또한 학교 등교시간 이전에는 금지된다.

2. 청소년근로보호의 역사적 발달

1) 18세기 중반까지 유럽의 청소년근로보호 발달

유럽에서 청소년근로보호의 역사는 산업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중세에는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차원의 청소년근로보호 개념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당시 청소년 근로자는 기능공(Geselle)들을 고용하여 작업을 하던 장인(Meister)의 아래에서 기술을 배우던 소위 도제(견습생=Lehrlinge)가 대부분이었다. 도제와 기능공은 당시에는 장인의 가족에 포함되었다. 이 가족은 하나의 양육, 교육, 수학(修學) 공동체였다고 볼 수 있다. 장인과 도제와의 사이에 맺어진 교육계약(사제계약, Lehrvertrag)은 장인이 훌륭히 가르치는 동안 도제는 이를 잘 연마하여 일정한 수준의 기술 능력과 자질을 갖도록 의무지워졌다. 이 교육계약은 서로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맺어졌으며 장인은 그의 도제가 육체적으로 감내할만한 수준의 일을 시켰다. 장인과 도제의 관계는 길드조합의 통제 하에서 이루어졌다. 도제의 형편은 당시의 상황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상태였으며 불공평한 점은 매우 드문 경우였다. 왜냐하면 당시 길드조합은 생산과정, 노동시간, 장인이 조수로 쓸 수 있는 근로자의 수 등에 관한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장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다. 최초의 공식적인 아동근로보호를 위한 법령은 1284년 베네치의 유리세공 공장에 적용된 것으로 도제가 될 수 있는 나이를 최소 8세로 제한하였다.

독일에서는 이탈리아보다는 늦게 길드조합이 최초의 아동보호 규정을 15세기에 도입하였다. 이 규정은 도제의 건강, 도제 연수기간, 매일의 노동시간, 도제 시작연령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예를 들면 뉘른베르크에서는 책을 엮는 일을 최저 14세, 뉘텐베르크에서는 벽돌공 연수자는 15세 등으로 제한하였다. 아동근로는 17세기까지도 단지 하나의 예외적 현상이었으며 흔치 않은 일이었다.

18세기에는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아동근로와 관련한 상황은 대단히 큰 변화를 맞는다. 생산기계의 발명은 상품 생산을 하는 공정에서 인간노동을 훨씬 능가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겨지던 수공업의 매뉴팩처(Manufaktur)는 공장의 등장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가내

수공업 공장이 대규모 생산 공장으로 변화하는데 있어서의 전제조건은 지속적인 생산증가를 위한 조건으로 필요한 기술적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자본의 준비였다. 생산 요소로서의 노동은 자본으로 바뀌어 졌으며 동시에 노동을 제공하던 노동자들은 대규모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노동자 국민의 사회적 형편은 매우 열악하게 되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이 더욱더 비참한 생활에 놓이게 되었다.

2) 영국의 아동노동과 공장법(Fabrikgesetzgebung) 제정

영국은 산업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나라이나 동시에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력 착취의 피해가 가장 먼저 발생된 나라이기도 하다.

영국에서 아동은 산업화의 초기부터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아동은 가족의 생활고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가 공장에 보낼 수 밖에 없었던 값싼 노동자였다. 8~9세부터 아동들은 노동자가 되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욱더 이른 나이에 노동자가 되기도 하였다. 노동시간은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가 일반적이었다. 중대한 질병,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높은 사고율과 근로사고 등은 비일비재하였다. 당시의 평균 기대수명은 약 35세 정도로 낮았으며, 아동과 유아사망률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생활형편으로 인해 매우 높았다.

아동을 둘러싼 이 열악한 환경은 1802년 최초의 근대적인 아동근로보호를 위한 법을 만들어 냈다. 이 법은 아동의 일일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였다. 이 법은 소위 ‘공장법’(Fabrikgesetz)이라 불리는 일련의 법률 중 최초의 법이다. 이 법은 후에 의회의 공장조사위원회(1833) (Factories' Inquiry Commission)와 아동고용위원회(1842/43)의 요청에 따라 더욱 발전적 방향으로 수정, 보완되었으며 아동의 노동보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이 되었다. 이 아동위원회는 영국의 모든 산업지구에서 조사활동을 하였으며 공장의 근로환경을 주요 조사내용으로 하였다. 조사결과는 아동의 근로조건이 성인의 근로조건과 거의 차이가 있지 않아 일반 노동보호법과는 다른 아동보호를 위한 법률의 제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공장법의 결정적인 영향은 소위 공장감독관(Fabrikinspektoren)의 신설

이며 1833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공장법률들은 통제 가능한 조항이 없었던 관계로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게 존재하였다.

3) 1차 세계대전까지의 근로보호 정책

19세기의 시작까지도 독일에서는 법률로 제정된 아동을 위한 근로보호정책은 알려진 것이 없다. 여기서도 아동의 노동환경은 당시 영국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당시 고아원, 빈민원, 그리고 노동시설(Arbeitshaeusern)에 살던 아동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아동들이 양육되고, 학교 교육을 받고, 미래의 직업을 준비하는 일이 이루어졌다. 18세기 중반까지 이 시설의 아동들은 주변의 공장에서 요구할 때는 무보수로 노동을 제공하였다.

1767년부터는 장인과 시설들 간에 일반적으로 3년 기한의 특별 계약을 맺어 아동노동의 착취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 또한 농업분야에서도 아동노동의 착취에 대해서 그 문제점이 주요사항으로 발전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가족 내에서는 아동은 가족의 농사 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가 소작하고 있는 농장주의 집에서 일반적으로 보통 일년 정도의 무보수로 일을 해주었다. 이 아동들은 소위 ‘하인신분’(Gesinde)으로 농장주에 의해 농사일이나 공장 일에서 노동을 착취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으며 생활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하였다.

이처럼 소위 초기 자유주의적 사고가 지배하던 이 시기에는 국가기관이 아동노동의 비참함을 돌보지 못하였었다. 그러나 점차 아동이 비참한 노동현실에 놓여있다는 문제를 알게 되면서 아동의 일반적 건강에 심대한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게 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하게 되었다.

최초의 프로이센국의 수상이었던 하텐버그(Hardenberg)의 아동근로와 관련한 노력의 결과 1818년 교육부와 상공부 장관이 아동의 보호에 관한 국가적 정책을 내어놓게 되었다. 이 정책의 내용은 당시 프로이센의 모든 도지사 및 자치단체장이 지역의 공장에서 근로하고 있는 아동의 노동연령, 건강, 학

교 수학 등의 상황에 대해 실태 보고서를 작성토록 요구하였다. 이 실태보고서에 의해 부분적으로 놀랄만한 아동노동 현실에 대해 알게 되었으나 유감스럽게도 당시 교육부와 상공부의 갈등으로 인해 괄목할만한 법규의 제정은 마련되지 못하였다.

최초로 프로이센 정부의 국가적인 관심이 강력하게 실천적으로 옮겨지게 된 계기는 당시 육군 중장 폰 호른(von Horn)장군에 의해 프로이센 왕에게 보고된 ‘육군사업백서’(Landeswehrgeschaeftsftsbericht)에 의해서다. 1828년 폰 호른 장군은 백서를 통해 당시 산업지역 출신 신병들의 비참할 정도의 건강상태를 고발하였으며, 미래의 병사가 될 아동의 광범위하게 퍼진 야간노동(Nachtarbeit)의 폐해와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고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리드리히 빌헬름3세 프로이센 왕(Friedrich Wilhelm III 1797-1840)은 진정한 의미의 노동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최초의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개입 정책을 실천하게 되었다.

폰 호른 장군의 군사 정치적 고려에서 출발한 아동노동 보호를 위한 노력은 당시 라인지방의 주지사인 폰 보델슈빙흐(Von Bodelschwingh)와 몇 개의 라인지역 공장들의 노력에 의해 보완되었다. 그들은 이미 이 지역에서 사회정책(Sozialpolitik)적, 사회복지(Sozialwohlfahrt)적 측면에서 공장노동 아동의 생활을 돌보고 있었다. 그들의 지속적인 노력은 라인주의회가 1837년 7월 프로이센 국왕에게 보낸 입법청원의 결과였다.

이 입법청원의 내용은 공장에서 일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한 ‘보호법’을 제정해 달라는 요구였다. 이러한 모든 노력의 결과는 1839년 ‘사업장내 청소년 근로자에 관한 프로이센 법률’의 제정으로 나타났다(Preussisches Regulativ ueber die Beschaeftigung Jugendlicher in den Fabriken).

이 법은 최초 아동과 청소년의 근로보호에 관한 조항을 담은 법률이며 아동보호의 국가적 책임이 제도화된 의미를 갖는다. 이 법률에 따르면 9세 미만의 아동은 공장근로가 금지되며 16세 미만 아동의 근로는 하루(日) 10시간 이내로 제한되었다. 야간 노동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금지되었다. 9세부터 16세 사이 청소년들의 일요일과 휴일 근무도 금지되었다. 오전 근무와 오후 근무 사이에는 매 단위 근무 당 15분의 휴식시간과 한 시간의 점심을 위한 휴식시간이 보장되었다.

아동노동 시간의 제한으로 인한 커다란 효과는 학교 수업에 있어서 매일 5시간의 의무수업시간 제도의 도입이 가능하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아동들은 전일 공장노동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없는 상태였으나 국가적 차원의 근로 보호 시간제정 등으로 인해 학교에 갈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아직 이 법률은, 한편으로는, 법률위반을 감시하는 국가적 통제 시스템의 미비로 인해 그 효과성이 적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법률이 단지 공장(Fabriken)과 광산노동(Bergbau)에 한한 법규였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한정적이었다. 수공업이나 가내사업(Heimarbeit)에 종사하는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은 이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당연히 근로보호는 보장이 되질 못하였다. 이러한 불충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프로이센 정부는 1853년 오늘날의 근로감독관(Gewerbeaufsicht)인 공장감독관(Fabrikinspektoren)제도를 도입한 소위 ‘수정 프로이센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 공장감독관 제도는 아동의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를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수정 프로이센 규정에 의해 공장노동에서 아동의 보호연령은 만 9세에서 만 12세로 높아졌다. 만 12세에서 14세 미만 아동의 하루의 노동시간이 최고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야간노동은 20시 30분부터 다음날 5시 30분까지 금지되었다. 오전과 오후 근무시간에 각 15분씩 주어지던 휴식시간은 각각 30분으로 확대되었다. 최초로 공장주에게 근로 청소년을 위한 노동 수첩(Arbeitsbuch) 제도의 도입이 의무화 되었다. 그 후 일 년 후에 프로이센 정부는 16세 미만의 아동의 광산의 갱내 노동을 금지하는 특별법령(Sonderverordnung)을 제정하였다. 프로이센의 이러한 노력은 거의 모든 독일제국내 연방소국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유사한 제도가 도입되었다.

작센(Sachsen)공국에서는 1861년 10월 15일 최초로 산업법(Gewerbegesetz)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10세 미만의 아동노동 금지를 의무화 시켰으며 1865년부터는 12세 미만 아동에까지 노동금지를 확대시켰다. 1853년 프로이센에서 도입된 공장감독관 제도는 1870년 바덴공국(Baden), 그리고 1872년의 작센공국(Sachsen)에서 도입되어 노동보호 정책이 실시되게 된다. 작센공국의 공장감독관 제도는 프로이센과 바덴공국에 비해 조금 늦게 도입되었으나 질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 작센공국의 공장감독관 제도는 공장 내 아동·청소년

년의 보호규정준수 등을 감시 통제 하는 것뿐 아니라, 독일에서는 최초로, 모든 공장 내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을 주는 것으로부터의 보호를 위해 감시하는 역할이 더해졌다.

1869년에는 지금까지 북부독일 연방들이 각자 독자적인 노동보호법안을 운영하던 제도를 단일안으로 통일 하였다.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1871년에는 모든 독일제국 연방 소국들이 통일된 법률을 갖게 되었다. 이 후 아동·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제도적 발전은 급하지 않게 진전이 된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공장감독관들은 그들의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금씩 어려움에 처하기도 한다. 고용주와 노동자들은 공장 감독관들의 감독에 대해 별로 달갑게 생각지 않고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공장주 입장에서는 공장 감독관이 그들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자대로 그들이 좀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감소되는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다. 이런고로 1878년 제국법률(Reichsgesetz)로서 산업체규정(Gewerbeordnung)이라는 법률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지금까지의 강제적인 산업체 감시권한은 경찰의 동반 입회 하에서 감시 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다. 또 이 법률은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을 금지하였으며, 14세 미만 아동은 하루 최대 4시간까지의 노동이 허가되었다. 14세에서 16세 사이 아동의 최대 노동시간도 이 법에서 정하고 있다.

이 시기는 정부가 강력한 근로보호 제도의 확산에 대해 어느 정도의 주저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 제도의 실행 시 독일 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시점에는 노동조합 등의 결성으로 인해 스스로의 권익을 위한 노력들이 실천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아동과 청소년의 근로보호 형편은 점점 나아지는 상황이었다.

1891년에는 소위 ‘노동자보호법’(Arbeiterschutzgesetz)이 제정되었으며 원동력(발동기)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이 법의 규정을 준수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라 13세 미만의 아동의 노동은 금지되었으며 14세 미만 아동은 국민학교(Volksschule;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를 졸업하여 의무교육의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시에만 공장 근로가 허용되었다. 일요일과 국경일 근무는 제한되었으며 18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상급학교 수업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였다.

1903년 아동보호법(Kinderschutzgesetz)은 최종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최

저연령을 13세로 규정하였으며 일일 근로시간을 아동은 6시간, 16세까지의 청소년은 10시간으로 규정하였다.

4) 1차 세계대전(1914-1918) 후의 발달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는 전쟁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보호정책이 다소 느슨한 형태로 변하였었다. 그러나 전쟁 후 1918년에는 법률의 보호내용은 이전의 법률상태로 다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상당부분 확대된 모습을 보인다. 1918년 11월, 12월 그리고 1919년 3월에 제정된 ‘전후복구법’(Demobilisierungsverordnungen)등은 모든 산업체 노동자와 사무직 근로자(Angestellten) 하루 8시간 근무제를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모든 영역의 청소년 근로자에게도 연계되어 적용되었다.

이후, 몇 년 후에는 청소년에 관심이 있는 사회단체들이 청소년 근로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도 조직화된 청소년단체(Jugendverbände)들이 청소년 근로보호의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였다. 이 요구를 지원하기 위해 ‘독일 청소년 연맹’(Der Deutsche Jugendverband)은 1926년부터 1927년까지 전국의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결과에 따라 근로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1938년 청소년 근로보호는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에 편입되어 통일되었으며 다시 한번 상당부분 개선되었다. 이 법률은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가 다양한 예외 조항과 더불어 규정되고, 보호연령이 16세에서 18세까지 확대되었다. 주당 근로시간은 48시간 이내로 제한되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12일에서 15일에 이르는 유급 연가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법률은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 영향을 지속적으로 발휘하였다.

5)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발달

2차 세계대전 후에는 각 연방의 주(Länder)들이 각자의 독립적인 청소년 근로보호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상황은 연방지역에 있어서 법률의 통일성이

깨어질 수 있는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1949년 5월 23일 제정된 헌법이 효력을 발생하면서 근로권(Arbeitsrecht)과 이와 관련된 청소년을 위한 근로보호법이 마련되었다. 연방정부 차원의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법률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지방정부의 법률제정권은 더 이상 효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1960년에 새로운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의 새로운 조항은 다음과 같다: 14세 미만 아동근로 금지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조항의 삭제, 16세 미만 청소년의 주당 40시간 이하 근로시간 도입, 16세 이상의 청소년 근로는 주당 44시간 이하로 제한, 24일 유급휴가, 동료와 경쟁 작업 금지, 콘 베이어 벨트 작업 금지(Verbot der Akkord- und Fliessbandarbeit), 청소년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의 도입 등이다.

1960년부터 1976년까지 상황에서 보면 이 새로운 청소년근로보호법은 특히 중·소규모 업체에서는 그리 큰 개선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산업체 감독은 그 인원의 부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법규 위반을 통제하거나 막을 수 있는 여력이 없었다. 감독관청은 매년 발생하는 50,000건 이상의 법규위반과 나타나지 않는 더 큰 수의 위반들로 인해 담당 인력들에 있어서 심한 업무적 부담을 갖게 되었다. 특히 1969년 이후는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교육적 측면에서 사회적 상황이 대단히 큰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1973년 5월 독일 노동조합연맹(Deutscher Gewerkschaftsbund)은 청소년근로보호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이 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그들은 새로운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 기회의 가능성을 낮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용자의 기본적인 의견은 새로운 보호조항등으로 인해 사용자가 지원하는 직업교육 제공에 관한 관심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미였다. 이런 이유로 중요하고 꼭 필요한 청소년 보호조치내용이 직업교육을 저해시키는 규정으로 무가치한 것이 되어버렸다.

1976년 5월 8일엔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의 관심을 일치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근로보호법이 효력을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 법도 조금 지나지 않아 장기적으로 유효할 수 있는 법률이 못된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특히 사용자 측에서는 이 법이 청소년의 직업학교 방과 후의 시간과(제9

조) 야간휴식(제14조)에 있어서 '융통성 있는 규정'을 요구하였다.

1984년까지는 이 법률의 위반 건수는 매년 약 30,000건 정도로 높지 않게 집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한편으로 법규 위반에 대해 상당히 관대하게 처리 및 취급 한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에게 직업교육의 기회가 부족해지자 연방정부는 1982년 6월 16일 새로운 법률을 고시하고 1982년 7월 16일 공포를 하였다. 이 법률은 청소년 근로보호조항에 있어서 대폭 진전된 모습을 보인다.

1984년 국회는 법률안 조항이 대대적으로 개선된 내용, 특히 근로시간 영역, 교대시간, 야간근로금지, 일요일-토요일 그리고 공휴일의 휴무, 직업학교 등교 날의 휴무보장 등의 내용이 자세히 규정된 법안을 통과 시켰다.

가장 최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개정은 1997년 3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한 법률(JArbSchG)이다. 이 법률은 이미 존재하는 유럽연합법률(EU-Richtlinie 94/33 EG)에 맞추어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나이 제한이 14세에서 15세로 높아졌다. 13세 이상의 아동근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위험한 노동의 청소년근로 절대 금지 등의 조항이 개선되었다.

6) 연도별 주요법령과 내용 정리

다음은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역사를 연도순으로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

(1) 프로이센 법령(Preussisches Regulativ)

① 년도: 1839

② 주요내용:

- 9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 9세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일일 노동시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
- 9세부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야간노동금지

(2) 수정 프로이센 규정(Aenderung des Regulativs)

① 년도: 1853

② 주요내용:

-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 12세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일일 노동시간 최대 6시간으로 제한
- 사업장 감독을 위한 기구 설치; 공장감독관

③ 해당 사업장: 공장과 광산

(3) 사업장(산업)규정(Gewerbeordnung)

① 년도: 1878

② 주요내용:

- 12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 12세부터 14세 미만 아동의 일일 노동시간 최대 4시간으로 제한
- 14세부터 16세까지의 청소년 일일 노동시간 최대 10시간으로 제한
- 사업장 감독을 위한 구속력 있는 기관 설치; 공장감독관

③ 해당사업장: 모든 증기기관을 사용하는 공장·제철공장·건설사업장·조선소

(4) 사업장규정 개정 = 노동자보호법 A(Nobelle zur Gewerbeordnung · sog. Arbeiterschutzgesetz)

① 년도: 1891

② 주요내용:

- 13세 미만 아동의 노동금지
- 14세 미만 아동의 노동은 국민학교 의무교육 해당자가 아닐 경우에만 해당
- 2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야간노동 금지
- 18세 미만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기회 제공이 사용자의 의무
- 휴식에 관한 조항 설치
- 공장감독관 제도의 확대

③ 해당 사업장:

- 3.3)과 동일
- 3.3)을 포함하여 원동기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최대 4주간 허용

- 일일 근무시간의 연장 가능 - 8시간에서 8시간 30까지. 연장근무 시간은 해당주 내에 다른 노동일의 근무시간에서 제하여 주어야 함
- 농업, 축산업, 건설업, 조립공사 등에서의 교대 근무 시간 사이의 휴무는 10시간 내에서 11시간으로 늘어남
- 일반적인 청소년 노동시작 시간이 오전 7시에서 6시로 당겨짐. 제빵 제과점은 16세 이상에 한하여 오전 5시, 17세 이상은 오전 4시
- 16세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만 근로가 행해져야 함
- 직업교육중의 청소년은 다교대 근무라도 6시에서 23시 사이에만 근로가 행해져야함

③ 해당사업장:

- (5)와 동일.

(8) 이차 개정-청소년근로보호법

(Zweites Gesetz zur Aenderung des Jugendarbeitsschutzgesetzes)

① 년도: 1997

② 주요내용:

- 이 법은 유럽연합의 법률에 따른 내용을 담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관한 연령 규정
- 아동 또는 의무교육 연령 내 청소년에 대한 조항 삽입
- 화학제품에 관한 법률과 생물학적 재료 등에 관한 위험한 노동의 리스트 보완
- 사용자에 의한 근로환경의 판단에 관한 조항
- 청소년 근로보호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은 15세부터 만 18세 생일 까지를 말함
- 15세 미만 노동금지
- 비록 직업교육을 받고 있더라도 만 18세가 넘으면 청소년근로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요구할 수 없음
- 의사 진찰에 관한 몇 개의 내용이 변함
- 한 주의 휴무일은 가능한 한 연속적인 날로 제공되어야 함

3. 현행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주요내용

1) 목적과 과제

청소년근로보호법은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근로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청소년은 그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발달에 있어서 지장을 받아서는 안된다. 청소년은 근로장소에서 과도한 부담이나 사업장의 요구로부터 보호되어야 하고 제반 위험으로부터도 보호되어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법과 아동근로보호규정은 아동과 청소년이 아래와 같은 근로나 아르바이트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 너무 일찍 시작되는 일
- 너무 오래 걸리는 일
- 너무 어려운 일
- 아동·청소년을 위협하게 하는 일
- 아동·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은 일

아동·청소년의 근로 중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본 법률은 근로의 시작 전과 근로중의 건강을 위한 관리가 의무적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은 또한 청소년 개개인의 정신·신체적인 상태가 고려되어야 함을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과 발달정도를 벗어난 근로를 행하게 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건강상 문제나 발달적 문제가 직업적인 근로로 인해 더욱더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의무교육기간 중의 학생은 학교수업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아동의 아르바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학생이 학교 수업에 더해 근로를 한다는 것은 위험의 정도가 그 만큼 크다는 것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렇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일로 인해 학교 수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법은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가능성과 종류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세심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근로청소년에게 충분한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퍼스널리티를 발달시켜갈 수 있도록 충분한 여가와 더불어 충분한 의료적 관리가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2) 보호대상(제1조, 제2조)

청소년근로보호법은 학업중이거나 또는 직업에 종사중인 모든 18세 미만의 젊은이들에 해당된다. 이 법은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가내노동에 종사하더라도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이 법에 따라 아동은 15세가 안된 자이며, 청소년은 15세부터 18세 미만자를 칭한다. 또한 이 법에서는 청소년이 아직 의무교육 기간 중에 있으면 아동으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독일의 의무교육기간은 12년이다. 라인란드-팔츠(Rheinland-pfalz) 주(州)에서는 전일제 학교수업에 있어서는 9학년까지가 의무교육기간이다.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계속 인문계 또는 실업계 학교를 다니거나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의무직업학교(Berufsschule)를 다니게 된다.

3) 아동노동금지(제5조-제8조, 제11조-제15조)

아직 의무교육기간 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노동이 금지되어 있다. 이 금지의 예외적 사항은 ‘청소년근로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과 ‘아동근로보호규정’(Kinderarbeitsschutzverordnung)에 특별한 전제조건 하에서 허가 되어진다. 예를 들면 작업치료나 노동치료 또는 현장실습의 범주에서는 근로가 허락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담되지 않고 적절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하루 7시간 이내 그리고 주당 35시간 이내로 허용된다.

6세 이상의 연극, 연주회, 홍보 광고, 방송국의 녹화, 녹음, 영상물, 영상촬영, 사진촬영 등은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특별한 전제조건 내에서 예외를 인정한다.

13세 이상의 아동과 아직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청소년은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부담이 없고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에 근로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부담이 없는 일(Leichte Arbeit)이란 청소년의 능력과 특수한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고 청소년의 건강, 안정, 아동의 성장, 등교와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수업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이 조성된 다음 행해지는 일을 의미한다.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하루 2시간 이상의 근로가 금지된다. 농업에 종사하는 부모의 가내노동의 경우에는 하루 3시간 이상의 근로는 금지된다. 근로의 전제조건은 상기 외에도 주 5일 근무, 18시부터 다음 날 8시 사이, 그리고 학교 수업 시작 전과 수업 진행 중에는 근로를 시킬 수 없다. 허용된 근로는 아동근로보호규정(Kinderarbeitsschutzverordnung)에 명시되어 있다.

13세 이상 아동의 근로는 특별한 조건하에서만 근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신문배달, 잡지배달, 광고전단배부, 집안일과 농사일에서의 가사노동, 정원근로, 심부름 근로, 베이비씨터, 가정교사, 애완동물 돌보기, 특정한 시장보기, 스포츠, 그리고 교회나 협회, 연맹, 정당 등의 비영리 단체에서의 아르바이트 등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은 15세부터 방학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년 4주까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

근로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최대 하루 8시간과 주 40시간까지 허용된다. 이 경우에도 예외는 있다. 만일 어느 하루 일이 단축되는 경우 다른 근로 날에 연장하여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최대 하루 8시간 3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해당 주에 몇 날의 초과 근무일이 있더라도 총합하여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농업에서는 16세 이상의 청소년은 추수기에 일 9시간까지 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2주 내에 85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청소년들은 보통 주말을 제외한 주 5일 근무가 적용된다. 아주 특별한 근로영역을 제외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로 법에 의해 보장된다. 비록

어느 사업장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예외적으로 근로 허용이 되어 있더라도 청소년의 경우에는 토요일, 일요일 근무는 제외 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유도하고 있다. 만일 청소년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그들은 같은 주 다른 요일을 휴무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일일 근로시간과 주 근로시간의 최대 근로시간은 노동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규정화되어 있다. 학교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이 어느 시간대에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업교육협약(Ausbildungsvertrag)이나, 근로협약(Arbeitsvertrag) 또는 작업협정(Betriebsvereinbarung)이나 임금협정(Tarifvertrag) 등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 임금협정(Tarifvertrag)에 의해서 최대 허용된 근로시간은 일 9시간까지와 주당 44시간 그리고 주당 5일과 반나절을 나누어서 근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도 2달 이내로 주 40시간 근무의 평균치가 맞아야 한다. 즉 이번 달에 예외적으로 주당 44시간 근무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2개월 내로 다음달에는 주당 36시간 등으로 조정되어 평균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보호와 건강보호를 위해 근로시간 중에는 휴식시간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근로 작업장과 여가시간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일일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교대근무 사업장은 1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광산의 갱내 근로는 휴식시간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대중업소, 농업, 축산업, 건설건축업에서는 휴식시간 포함하여 1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임금협상을 통해 광산근로에서는 하루 한 시간 연장은 허용이 된다.

청소년은 기본적으로 6시부터 20시 사이에만 근로가 허용된다. 예외적으로 특정한 사업영역에서는 특별규정에 의해 16세 이상 청소년은 아래와 같이 근로가 가능하다.

- 대중업소나 전시회장 : 22시까지
- 다교대 사업장 : 23시까지
- 농업 : 5시부터 21시까지
- 제과·제빵점(Baekerei)이나 다과점(Konditorei): 5시부터

제과·제빵점에 한해서는 17세 이상 청소년은 새벽 4시부터 근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독일국민들의 아침식사는 아침 일찍 갓 구워낸 빵을 주요 식단으로 하기 때문에 아침식사 시간 전에 빵이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도 예외적으로 청소년이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는 직업학교 등교시간이 9시 이전에 될 경우 전날 근로시간은 20시 이전에 종료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다음날 직업학교 등교에 필요한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4) 직업학교와 시험(Berufsschule und Pruefungen. 제9조, 제10조)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에는 사용자는 청소년이 직업학교 수업에 참여할 시에는 휴무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학생이 중간고사(Zwischenpruefungen), 졸업시험(Abschlusspruefungen), 그리고 재시험(Wiederholungspruefungen)을 치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다음 사항에서는 어떠한 노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 9시 전에는 수업을 시작할 수 없다. 이것은 비록 18세 이상 청소년, 또는 청년이라 하더라도 그가 직업학교에 다니는 한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주중 직업학교 등교하는 날의 45분 수업이 5교시이상 진행 될 시
- 직업학교 수업이 일주일에 최소한 5일 이상, 25시간 이상의 수업이 몰아서 일괄수업(Blockunterricht)으로 진행될 때, 여기에 더하여 주당 2 시간까지 직무와 관련한 연수도 마찬가지이다.

직업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시간과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 직업학교 수업으로 인한 임금의 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소 45분 수업이 5교시 이상 진행되는 직업학교 등교 날은 8시간의 근로시간으로 계산된다. 일괄수업으로 진행된 직업교육주간(Berufsschulwochen)의 경우 주당 5일 이상 총 25시간 이상의 수업일 경우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계산된다. 만일 수업이 9시 이전에 시작될 경우, 수업이전의 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

- 이러한 근로에 해당하는 직업교육을 마친 청소년
- 해당 근로 전문가의 감독에 의해 청소년의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

8) 휴식과 여가 그리고 년가(Ruhepasuen, Taegliche Freizeit, Urlaub, 제10조, 제11조)

휴식과 회복을 위해 청소년은 규정화된 휴식시간을 갖는다. 이 휴식시간은 아래와 같다:

- 4시간 30분 이상에서 6시간까지의 근로시간은 30분 휴식
- 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의 경우 60분 휴식

청소년은 휴식시간 동안에는 일을 해서도 안 되며 일을 준비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휴식시간은 청소년이 근로 시작 전에 정해져 있어야 한다. 근로 중 15분 미만의 작업중지(Arbeitsunterbrechungen) 시간은 휴식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하루 일과 근로가 종료되면 청소년에게는 최소한 12시간 이상의 휴식차원의 여가시간이 주어져야한다. 이 여가시간은 중간에 단 한 시간이라도 근로시간이 들어갈 수 없다. 청소년의 나이에 따라서 휴가는 최소한 다음 이상으로 보장되는 것이 법적으로 확정되어 있다:

- 15세; 30 근로일 휴가(주말과 국경일 등을 뺀 순수한 근로 날)
- 16세; 27 근로일 휴가
- 17세; 25 근로일 휴가

광산의 갱내 근로의 경우는 여기에 3일씩을 더 하게 된다. 나이의 계산은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즉 연 나이로 계산한다. 청소년근로자에게 제공되는 휴가는 직업학교 수업이 없는 날을 선정하여 주어야 한다(Soll). 만일 휴가기간에 청소년이 직업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경우는, 학교 등교날 수 만큼 휴가가 더 주어져야 한다.

9) 위험한 근로의 판정(Beurteilung von Gefaehrung, 제28조, 제29조)

사용자는 청소년들이 근로를 시작하기 전과 근로중이라도 근로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가 있게 될 시는 청소년들에게 주어지는 일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일하는 사업장에서는 일의 위험정도의 판정(Gefaehrungsbeurteilung)이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사용자는 청소년이 근로를 시작하거나 근로중이라도 상당부분 근로환경이 변경되는 경우 청소년에게 그 일의 사고위험도와 건강 위험정도에 대해 고지해 줄 의무가 있으며 그 위험을 예방하거나 위험발생 시 조치 사항에 대해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청소년이 기계를 처음 작동하는 경우, 위험한 작업부서 또는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생산재료 등을 처음 대하는 경우 등에는 그 일의 특수한 위험성과 근로에 있어서의 특별히 요구되는 행동규칙 등을 교육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교육은 매 6개월 마다 적당한 시기에 재 실시되어야 한다.

10) 건강관리(Gesundheitliche Betreuung, 제32조-제46조)

모든 청소년은 직업교육이나 직장 취업을 하여 일하게 되는 경우 그 일이나 교육의 시작에 앞서 의사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근로보호법에서는 진찰을 위한 의사의 선택은 청소년의 자유의사에 따른다(Prinzip der freiem Arztwahl).

청소년은 그가 선택한 현장 직업교육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의료적 문제나 제한이 없다는 의사의 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 의사의 확인서는 14개월이 경과되어서는 안 된다. 사용자는 의사의 진찰 확인서 없이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는 청소년에게 건강상 아무런 해를 끼칠 염려가 없는 가벼운 일이고, 그 일이 2개월 이내로 짧게 진행되는 경우는 의사의 확인서 없이 아르바이트를 시킬 수 있다.

청소년이 직업교육 또는 근로 시작 후 1년이 지나면 사용자는 청소년으로부터 다시 건강검진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청소년이 일 시작 후 9개월이 지나면 필히 의사의 재검진을 받도록 요구해야하며, 재검진의 시기와 그 결과의 제출날짜를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근로시작 후 14개월이 경과 될 때까지 청소년이 의사의 재검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근로를 할 수 없다.

의사는 그가 검진한 청소년이 다른 의사에 의해 보충 검진이나 치과의사의 검진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청소년의 건강상태와 발달상태를 판정할 수 있으며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문서로 정리하여야 한다. 대개의 경우는 전문의의 소견, 예를 들면 피부과, 근로의사(Arbeitsmediziner), 안과의사의 소견으로도 청소년의 직업, 또는 근로의 종류에 적절한 건강상태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이것 또한 인정이 된다. 만일 의사의 진단 결과 청소년이 하고자 하는 특정한 일에 건강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는 내용이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을 시에는 청소년은 그 일을 할 수 없다.

청소년 건강검진에 필요한 내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의사가 청소년을 검진할 수 있는 진찰권을 의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진찰권을 주 지방정부 해당 부서에서 발급한다. 라인란트 팔츠 주(Rheinland-Pfalz)에서는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부서(Einwohnermeldeamtern)에서 발급한다.

특정한 직업과 관련한 건강상 전제조건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정보는 직업상담소(Berufsberatung)나 지역 노동청(Oertliches Arbeitsamt)에서 얻을 수 있다. 만일 이러한 특정한 일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지역 노동청은 청소년에게 무료로 의사 진찰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이 건강상 제한을 줄 수 있는 직업에 대해 직업교육을 원하는 특별한 경우에도 상담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1) 광산 청소년 근로자(Jugendliche in Bergbau, 제24조)

광산근로에 있어 16세 미만 청소년의 갱내 근로(unter Tage)는 절대 금지된다. 16세 이상 청소년은 직업 교육의 과정이나, 직업교육 종료자 또는 전문가의 감독에 의해 청소년의 보호가 보장되는 경우에 갱내 근로를 할 수 있다.

12)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지역 위원회=지역 청소년 근로보호 위원회 (Landesausschuss fuer Jugendarbeitsschutz, 제55조-제57조)

지역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는 주 정부의 노동, 사회, 가족, 보건부(라인란트 팔츠의 경우, 다른 주에서는 해당 부서가 다를 수 있음)에 설치된다. 이 지역 위원회는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을 심의 자문하고 이 법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제의, 제안 등을 하게 된다.

13) 법률의 감독(Ueberwachung des Gesetzes, 제51조)

이 법률의 감독기관은 연방정부의 노동부이다.(Bundesminister fuer Arbeit). 라인란트 팔츠 주에서는 이 법의 유지를 위해 신설 감독국, 허가 감독국(Struktur-und Genemigungsdirektion), 지역산업 감독국(Regionalstellen Gewerbeaufsicht)이 담당하고 있으며 광산근로 청소년은 광산부(Bergaemter)가 감독, 감시하고 있다.

이 부서들은 이 법의 조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한다.

특정한 직업교육과 관련한 건강상 요구조건에 관한 질문을 직업상담(Berufsberatung)를 통해 답을 얻을 수 있으며 보충적인 근로담당의사의 상담도 지역 노동청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본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는 법률 위반(Ordnungswidrichkeit)이 되며 심한 경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심각한 법률위반을 15,000유로(Euro)까지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4. 아동근로보호규정

(Verordnung ueber den Kinderarbeitsschutz=Kindarbschv)

본 규정은 청소년근로보호법 제5조 제4항 a에 근거하여 연방 정부에 의해 1997.2.24. 시행규정으로 공포되었다. 본 규정은 아동근로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1조 : 근로금지(Baschaefigungsverbot) 13세 이상 아동과 의무교육기간 중의 청소년은 청소년근로보호법에서 규정한 것과 본령 제 2조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가 금지된다.

제2조 : 허용된 근로(Zulaessige Beschaeftigung)

1. 13세 이상 아동과 의무교육 기간 내 청소년은 오직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아르바이트가 허용 된다.

1) 신문배달, 주간지 등 잡지배달, 광고-홍보 전단지 배부

2) 집안일과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집안일과 정원에서의 일(청소, 잔디 깎기 등)
- 심부름 하기(Botengaenge)
- 동생 돌보기나 가족에 속하는 다른 이 돌보기
- 과외수업(Nachhilfeunterricht)
- 애완동물 돌보기

- 담배류와 알콜류를 제외한 시장보기

3) 부모가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일

- 추수, 밭 정리(경작)
- 자가 생산 농산물을 자신이 파는 경우
- 가축 먹이 주기 등

4) 운동 도우미(Handreichung beim Sport)

5) 교회나 종교단체, 협회, 단체, 정당 등 비 영리 기관의 집회나 행사 등. 이 경우에도 청소년근로보호법 제5조 제3항에 의해 아동에게 힘들지 않아야 되며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만 해당된다.

위의 경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의 의미는 직업적 근로가 아니라 부모가 주는 용돈에 더하여서 자신이 스스로가 벌어보고자 하는 소위 '용돈' 불리기(Taschengeldaufbesserung)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있어서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청소년 근로보호법 설명 자료집 아헨시(Aachen市. 2002).

- 아르바이트는 아동에게 적당할 정도로 쉬워야 함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며, 토요일의 경우는 청소년에게만 해당됨
 -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가능함
 - 학교 시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 일일 2시간 이상도 금지 됨
-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동이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해도 아르바이트로 인해 학교 수업능력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2. 제1조에 의해 아르바이트가 행해진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는 아동이 할 수 있을만한 쉽고, 힘들지 않는 일로 볼 수 없다.

- 1) 최대 7.5kg 무게의 짐을 지속적(정기적)으로 수작업을 통해 일하는 경우; 수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는 최대 7.5kg, 가끔씩 하는 경우라도 최대 10kg의 무게 부담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수작업이란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로서 물건 옮기기, 물건 하역하기, 물건 밀기, 물건 끌기, 물건 나르기 등을 의미한다.
- 2) 불편한 육체적 자세 등에 의해 신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 3) 기계를 조작(예, 전기톱 등)함으로서 또는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는 아르바이트

3. 허용된 근로(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청소년근로보호법의 보호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감독자격(Behoerdliche Befugnisse) 감독관청은 아동의 근로가 제2조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각 사안별로 평가하여 결정할 수 있다.

5. 독일의 직업교육과 직업학교

독일에서 의무교육제도가 법적으로 정비된 것은 18세기 당시 북부독일 지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17년 프리드리히 1세(Friedrich Wilhelm)의 법

령(Principia regulativa)에 의해 의무교육이 시작되었으며 프리드리히 II세(Friedrich der Grosse)는 1763년 프로이센국 전체에 의무 교육제도를 도입하는 법령을 제정하였다(das Generallandschullegelment). 이 의무 교육제도는 바이에른(1802), 작센(1835)등 당시 독일 공국들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칸디나비아, 프랑스 등 다른 국가의 의무 교육제도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오늘날 독일의 교육제도는 독일연방 공화국의 기본법(Grundgesetz)과 각 주의 헌법에 의해 보장되어 운영되며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며 개인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일반교육(allgemeinbildung) 및 직업교육(Berufsbildung)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의무교육은 만 6세부터 18세까지 12년이다. 4년 또는 6년간의 기초학교(Grundschule 우리나라의 초등학교에 해당)를 마치면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게 된다. 기초학교 다음의 상급학교인 인문 중·고등학교(Gymnasium), 실업계 중·고등학교(Realschule) 또는 직업 예비학교 등 어떤 형태의 학교를 다니든지 9학년을 마친 후 계속해서 실업학교, 인문학교 등의 정규 상급과정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은 최소한 의무직업학교에 다녀야 한다. 이처럼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제도화된 직업교육은 독일의 직업교육 발전의 근간이 되고 있다(김기홍, 1998).

독일의 직업교육은 직업교육법(Berufsbildungsgesetz=BBIG)에 의해 운영된다. 직업교육법은 독일의 독특한 직업 교육제도인 소위 이원직업교육 제도를(Duales Berufsausbildungs System)담고 있다. 이원교육제도는 산업체 현장 실무교육(Betrieb)과 직업학교(Berufsschule)가 합쳐진 의미의 제도이다. 이 이원교육제도에 따라 직업교육은 산업체 현장에서의 교육과 직업학교의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직업 교육을 받는 학생은 산업체 현장교육(Betrieb)을 통해 실제적인 실무기술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받으며 직업학교(Berufsschule)에서는 일반 교육적이고 직업 실무에 관한 이론과 실습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김기홍, 1998).

독일의 보통 중규모 이상의 기업체에서는 현장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교육학생은 교육기간동안 교육계약에 따라 교육수당을 회사로부터 받는데 일반적으로 초임 근로자 봉급의 20-40%를 받는다(김기홍, 1998). 산업체에서의 현장교육은 직업훈련학생을 가르킬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는 장인(마이스터=Meister)이나 전임 직업교육교사(Hauptberufliche Ausbilder)가 담당한다. 이들은 학생(Lehrling)의 현장실무와 기술을 지도하며 보통 일주일에 3일을 교육한다. 나머지 2일은 직업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을 받게 된다.

직업학교(Berufsschule)는 현장교육(Betrieb)과 더불어 이 직업교육의 한 축을 담당한다. 직업학교는 일주일 내내 등교하는 일반학교와는 다르게 보통 이틀 등교하는 단축학교(Teilzeitschule)의 형태이다. 이 학교에서의 수업은 직업과 직업교육 년차에 따라서 일주일에 8-12시간씩 진행한다. 만일 학생이 연수하는 직업이 그리 많은 지식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소위 단순한 직업(Splitterberufen)의 경우에는 수업이 몇 주간의 모듬식 수업(Unterrichtsblocken)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직업학교와 산업체 현장교육의 공통 목적은 직업교육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직업교육을 통해 학생이 졸업할 수 있는 정도의 충분한 능력과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다. 즉, 완전한 현장근로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다. 직업교육이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면 직업의 종류에 따라 담당하는 산업기관이나 단체가 졸업시험에 해당하는 시험을 주관하여 실시한다. 한 예로 판매직 직업교육을 받았을 경우 졸업시험을 상공회의소가 담당한다(Industrie-und Handelskammer).

직업학교에 등록된 학생은 의무적으로 학교에 등교하여 수업에 참석하여야 한다. 수업의 성적은 직업학교 졸업장에 기록된다. 직업계약에 의해 직업교육을 책임지는 회사의 사용자는 학생이 직업학교에 등교할 수 있도록 보통 이틀 휴무일을 주어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있다. 성공적으로 직업학교를 종료하게 되면, 각 주의 법률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전공 직업의 종류와 관련한 상급학교에 진학이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교육과학부(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에 따르면 매년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업계약을 고용주와 맺은 학생은 2002년 572,323건이었다. 2003년엔 557,634건 그리고 2004년엔 572,980건이었다. (연방교육과학부, 2005년 직업교육백서=Berufsbildungsbericht 2005).

Ⅲ. 독일의 청소년근로보호법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1. 가칭 ‘청소년근로보호법’ 제정

우리나라는 아직 독자적인 청소년근로보호를 위한 법률을 갖고 있지 않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상의 청소년보호 관련조항은 청소년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은 심리적으로는 자기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시기이며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시기이다. 정서적으로 독립된 자기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회적으로는 독자적인 의사결정 능력이나 행위능력의 부족을 보이며 사물의 판단에 있어서도 주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은 청소년이 발달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특별한 대우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청소년근로에 있어서도 그들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청소년의 특성이 잘 반영된 독자적인 가칭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주요 내용으로 기존의 법률조항에 대한 보완뿐만 아니라 새로운 조항들도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주말이나 법정휴일 등의 여가 보장, 휴식시간 및 공간 확보, 매일 일정시간 이상 여가시간 보장, 야간 근로 시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성인보다 많은 유급휴가 보장, 소위 경쟁노동이나 노동속도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노동의 금지, 위험 노동에 대한 법정 교육과 지도, 신체적 처벌 및 성희롱 금지, 건강검진 등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2. 청소년 ‘아르바이트’ 조항의 보완

청소년근로보호법은 기본적으로 학교에 적을 두고 있는 의무교육기간 중의 학생은 학교수업에 충실히 매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근로를 금지하여야 한다. 학생이 학교 수업 외에 근로를 한다는 것은 심신에 대한 위험의 정도뿐만 아니라 학업의 원활한 진행에 방해를 줄 가능성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법에서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용돈을 벌기위해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가능성과 종류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근로로 인한 피로회복과 건강한 사회인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가와 더불어 충분한 의료적 관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능력과 해당 일의 작업환경 등이 고려되고 청소년의 건강, 안정, 아동의 성장, 등교와 수업에 따라갈 수 있는 정도, 수업에 피해가 없도록 환경이 조성된 다음 행해질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의무교육 기간 내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은 하루 제한된 시간(예, 하루 2-3시간) 이상의 아르바이트가 금지되어야 한다.

3. 가칭 ‘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 설치

청소년의 근로보호를 위한 사항들과 가칭 ‘청소년근로보호법’의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의견을 행정기관에 제시하고 제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관으로 가칭 ‘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는 중앙정부차원의 위원회와 지방정부 내에 지방청소년근로보호위원회를 두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을 심의하고 조언할 수 있는 기능을 갖도록 한다. 위원회는 또한 청소년근로보호법의 내용과 목적을 해당 모든 대상에게 계몽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갖도록 한다.

참 고 문 헌

- 김기홍(1998). 독일직업교육훈련의 실태와 우리나라의 과제 : 한독교육학회 「한독교육학연구」 제 3권 제 2호 pp.27~38.
- Ministerium fuer Arbeit, Soziales, Familie und Gesundheit des Landes Rheinland-Pfalz 2003. "Broschuren" Jugendarbeitsschutzgesetz.
- Staatliches Amt fuer Arbeitsschutz Aachen(2002). Ueberblik ueber das Jugendarbeitsschutzgesetz.
- Bundesministerium fuer Bildung und Forschung(2005). Berufsbildungsbericht 2005.
- Staatsministerium fuer Wirtschaft und Arbeit Freistaat Sachsen(2005). Jugendarbeitsschutz 2005.
- <http://www.aonline.dkf.de/bb/p227.htm>
- <http://de.wikipedia.org/wiki/Berufsausbildung>
- <http://de.wikipedia.org/wiki/Berufsschule>
- <http://de.wikipedia.org/wiki/jugendschutzgesetz>
- http://de.wikipedia.org/wiki/kinder-_und_jugendhilfegesetz

ISSUE PAPER 06-IP02

외국의 청소년근로보호정책 연구

인 쇄 2006년 6월 27일

발 행 2006년 6월 28일

발행처 **한국청소년개발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발행인 배 규 한

등 록 1993. 10. 23 제 21-500 호

인쇄처 선명인쇄(주) 전화 (02)2268-4743 대표 조춘희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연구정보지원팀)

ISBN 89-7816-606-7(93330)
